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79
----------	-------

발의연월일 : 2023. 2. 24.

발의자 : 민홍철 · 임호선 · 김병욱  
김두관 · 장철민 · 한준호  
김윤덕 · 한정애 · 강득구  
조오섭 · 전재수 · 김정호  
김민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장성급 장교가”를 “장성급 지휘관이”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고충처리)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 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 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u>장성급 장교가</u> 지휘하는 부 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 회를 둔다.</p> <p>④ · ⑤ (생 략)</p>	<p>제36조(고충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u>장성급 지휘관이</u>-----</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